



#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

**건** 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 지난 5월 7일 대통령령 제 18822 호에 의해 일부 개정, 공포되었다.

□ 주요 개정 내용

- △ 등록기준 중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입(상설화)
  - 금융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0~50% 범위 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(제13조제 1항 제1호의2)

- △ 등록기준 중 사무실 재도입(3년 한시)
  - 기계설비공사업(20㎡ 이상), 가스시설시공업(제1종)20㎡ 이상)
- △ 시행일 : 공포후 1개월이 경과한 날(2005. 6. 8일부터 시행하고,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는 6월 이내(2005. 12. 7일까지) 동 개정 규정에 적합토록 등록요건 충족

| 신 · 구조문 대비표 |

현행	개정안
<b>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</b>	<b>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</b>
제13조(건설업의 등록기준)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	제13조(건설업의 등록기준) ① _____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1의2.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(이하 "금융기관 등"이라 한다)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(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(입찰보증을 제외한다)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제출할 것	1의2.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(이하 "금융기관 등"이라 한다)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(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(입찰보증을 제외한다)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제출할 것
가.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	가.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

현행	개정안
<p>의 재무상태·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,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</p> <p>나. 금융기관등은 재무상태·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·현금예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공시할 것</p> <p>다.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</p>	<p>의 재무상태·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,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</p> <p>나. 금융기관등은 재무상태·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·현금예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공시할 것</p> <p>다.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&lt;유효기간 만료전의 규정과 같음&gt;</p>
<p>2.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는 것</p> <p>나. (생략)</p> <p>다. 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 또는 관련되는 산업설비제조업을 영위한 기간(외국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 또는 산업설비제조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)이 2년6월 이상인 자</p>	<p>2. _____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.</p> <p>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다. 산업·환경설비공사업 _____ 산업·환경설비제조업 _____ 산업·환경설비제조업</p>
<p>3. 4. (생략)</p> <p>②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은 건설업등록기준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 다만,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당해 신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.</p> <p>1.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요건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1항제6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·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일 것</p> <p>2. 3. (생략)</p>	<p>3.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_____</p> <p>1. _____ 기술능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_____ 출입국관리법시행령 _____</p> <p>2. 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6조(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) ①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</p>	<p>제16조(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) ① _____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설업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등록기준중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다른 업종의 등록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인정받은 사항을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.</p> <p>다만, 건설업자가 가스시설시공업(제2종 및 제3종에 한한다) 또는 난방시공업(제2종 및 제3종에 한한다)의 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및 사무실은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.</p> <p>②·③(생략)</p> <p>제79조(건설공사실적의 기준) ①법 제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 : 6억원</p> <p>3. (생략)</p> <p>②(생략)</p> <p>제87조(권한의 위탁 등) ①(생략)</p> <p>②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위탁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③~⑤(생략)</p>	<p>다만, 건설업자가 가스시설시공업(제2종 및 제3종에 한한다) 또는 난방시공업(제2종 및 제3종에 한한다)의 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및 사무실은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.</p> <p>&lt;유효기간 만료전의 규정과 같음&gt;</p> <p>②·③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9조(건설공사실적의 기준) ①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_____ 산업·환경설비공사업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7조(권한의 위탁 등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_____</p> <p>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사단법인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</p> <p>③~⑤(현행과 같음)</p>

### 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사무실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유효기간) 사무실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.
- ③(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사무실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용례) 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- ④(중건의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